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

(이경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96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1월 01일

발 의 자 : 이경선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강동길, 경만선, 고병국,
김인제, 양민규, 이동현,
이상훈, 이승미, 이은주,
이준형, 이태성, 임만균,
정재용, 최 선 의원(14
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위탁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재위탁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내용을 삭제함(안 제4조의3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제1항의 본문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4조의3제2항의 본문 중 “재위탁 또는 재계약”을 “재계약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<u>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재위탁 또는 재계약</u>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재계약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